

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

의안 번호	248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5월 31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·세출 결산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
- 세입 결산액 9조 9,511억 2천만원
- 세출 결산액 8조 9,990억 4천 5백만원
- 차 인 잔 액 9,520억 7천 5백만원이며

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,353억 1천 5백만원과 사고이월액 3,015억 7천 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,151억 8천 8백만원임.

나. 채권현재액

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,042억 4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3,037억 6천 9백만원에 비하여 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다. 채무결산

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3,261억 1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조 5,656억 6천 5백만원에 비하여 2,395억 5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
라. 예비비 지출

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사용 결정액	36억 4천 2백만원
- 지출액	33억 3천 9백만원
- 이월액	1억 5천만원
-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	1억 5천 3백만원임.

마. 재무회계 결산

(1)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4조 8,725억 4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4조 8,934억 3천 3백만원에 비하여 208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
(2)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2조 1,655억 2천 7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2조 5,022억 7천 8백만원에 비하여 3,367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순자산은 12조 7,070억 1천 3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2조 3,911억 5천 5백만원에 비하여 3,158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바. 성과보고서 결산

2017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, 성과목표 22개, 단위과제 94개,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성과지표 71개 중 63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88.7%의 달성율을 거두었음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34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다. 지방재정법 제50조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 지방회계법 제19조

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○ 결산 총괄

(단위:천 원)

예산 현액 (A)	세입·세출결산			채무 상환	다음연도 이월비			보조금 집행 잔액 (F)	순세계 잉여금 (G)=B-E-F	집행잔액 (H) =A-D-E
	차인 잔액 (B)=C-D	세입 결산 (C)	세출 결산 (D)		소계 (E)	명시	사고			
9,921,584,430	952,075,079	9,951,119,797	8,999,044,718	0	436,887,138	135,314,923	301,572,215	0	515,187,941	485,652,574

○ 채권 및 채무

(단위:천 원)

구분	2016년도말	당해연도 증·감			2017년도말
		계	증가	감소	
채권	303,769,780	434,168	3,620,037	3,185,869	304,203,948
채무	1,565,665,649	△ 239,555,528	0	239,555,528	1,326,110,121